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53
----------	-------

발의연월일 : 2025. 12. 5.

발 의 자 : 임종득 · 성일종 · 김예지
김상훈 · 강명구 · 유상범
윤상현 · 김성원 · 이달희
박성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망이 장기간 마비되면서 행정·재난·보건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서비스가 멈추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함.

이는 국가 전산망 관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분산·이중화 체계가 미흡하며, 실시간 감시와 자동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또한 국민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한 경우 수립하도록 한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에 해당 국가핵심기반이 정보기술시스템 등인 경우에는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 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의 강력한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기술시스템의 마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국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핵심 정보

기술시스템 등의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 26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핵심기반 중 정보기술시스템 등에 대하여는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의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이를 국가재난안전통신망 등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66조의 제목 중 “재난지역에”를 “재난지역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안정을”을 “안정 등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8의2. 정보시스템의 마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한 지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여 통보한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에 개정된 제2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에 개정규정에 맞추어 수정하여 수립하고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 핵심기반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관리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6조의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① ----- ----- ----- ----- ----- ----- ----- . 이 경우 국가핵심기반 중 정보기술시스템 등에 대하여는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 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u><신설></u>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의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이를 국가재난안전통신망 등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66조(<u>재난지역</u>)에 대한 국고보	제66조(<u>재난지역 등에</u>)에 대한 국고보

조 등의 지원) ① · 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8. (생략)

<신 설>

9. (생략)

④ ~ ⑦ (생략)

보조 등의 지원) ① · ② (현
행과 같음)

③

안정 등을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정보시스템의 마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한 지원

9.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